사업방법서 별지

(모바일기기보험)

1. 보험의 종류 : 특종-기타특종/기타

2. 보험상품의 명칭 : 모바일기기보험

3. 보험목적에 관한 사항
   가. 모바일기기의 도난, 분실, 파손으로 발생하는 손해

4.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가. 보험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1년 이상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 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보험료영수증과 상환하여 그 전액을 영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영수할 수 있다.

5. 배당에 관한 사항 :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6.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7. 기타
   가. 보험료의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나. 보험료 납입 최고 기간: 관계법령 및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하지 아니한다.
   라. 보험료의 반환: 관계법령 및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보험계약대출: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을 하지 않는다.
   바. 보험 종목의 변경: 회사는 보험 종목의 변경을 승낙하지 아니한다.
   사. 모집의 제한: 단체보험계약에 한하여 인수한다.
   아. 도난·분실·수리불가 보상제외 특별약관을 첨부한 계약에 대하여 별칭으로 「( )파손보험」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 특약의 적용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2)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3) 기타
  1.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른다.
  2.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한다.

차.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을 부가한 계약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아래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피보험자(상품다수구매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보장내용*으로 상품설계
 * 불완전판매 우려가 적고 보험사고 입증 및 보험금 지급절차가 단순한 상품(예 : 상해사망)
(2) 보험료는 계약자(상품판매자)가 전액 부담*
 * 보험료 부담이 피보험자에게 전가되지 않음을 계약자로부터 확인 받은 경우 인수
(3)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주요 보장내용을 설명하고 피보험자 확인*를 받은 경우 인수
 * 가입전 설명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설명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가입후 설명 및 확인